

포항시 민원담당공무원 보험·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년 12월 11일

자치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년 11월 23일 포항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23년 11월 24일

다. 상정일자

○ 제311회 포항시의회(제2차 정례회)

•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(2023. 12. 11.) 상정·질의답변·토론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 : 배성호 총무새마을과장)

가. 개정이유

-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가입 대상을 추가하여 현재 실정에 맞도록 정비하고,
- 상위법령인 「국가배상법」 제2조 제2항에 따라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변상책임을 지도록 명문화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조례 제명 정비

- (현행) 포항시 민원담당공무원 보험·공제 등의 가입 조례

- (개정) 포항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·공제 등의 가입 조례

○ 보험가입 대상 민원업무담당공무원 추가(안 제2조)

○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조문 정비(안 제5조제2항)

- 「국가배상법」 제2조 :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발생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구상(求償)할 수 있음

- 고의 또는 과실 여부 확인 없이 변상하도록 한 조문 정비

○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따른 자구 수정

다. 관련법령

- 「국가배상법」 제2조(배상책임)
- 「주민등록법」 제36조(보험·공제 등에의 가입)
- 「인감증명법 시행령」 제20조(보험·공제 등에의 가입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이현주)

- 본 개정조례안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의 가입 대상 및 변상책임에 대한 규정을 상위법령인 「국가배상법」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,
- 주요내용으로는, 민원업무 보험가입 대상을 추가하여 현재 실정에 맞도록 정비하고, 상위법령인 「국가배상법」에 따라,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변상책임을 지도록 명문화하는 등,
- 민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재정적 배상책임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여, 공무원 업무능률 향상은 물론 사기 진작을 위해 본 조례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의 요지 : 생략

5. 토론의 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